

목재교육 전문과정(제8기) 교육생 모집 공고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번호: 산림청 제2020-1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교육생 모집을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0일

대구대학교

1. **과정명:** 목재교육 전문과정(제8기)
2. **교육기간:** 2024. 8. 24.(토) ~ 2024. 11. 9.(토) [일자 및 요일별 교육 시간 확인 요청]
 - 비대면(실시간 Zoom 온라인)교육 : 주중(23회) 오후 18:00~22:00
 - 대면교육 : 토요일(11회차) 10:00~18:00, 일요일(2회차) 10:00 ~18:00

※ 교육일정은 교육기관의 운영 및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3. **교육대상:** 제한 없음.
4. **교육장소:** 대구대학교 경산캠퍼스(경산시 대구대로 201번지)
 - 강의실: 메이커스페이스센터(AZIT) 이론교육실
 - 실습실: 메이커스페이스센터(AZIT) 목공실 등

가. 주소 : 우)38453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번지 대구대학교 메이커스페이스센터 (AZIT) 행정실

나. 연락처 : 053)850-4726
5. **모집인원:** 20명(목재가공실무 면제자 3명, 목재과학 면제자 1명, 교수학습·수업설계 면제자 1명)
6. **폐강기준:** 10명 미만
7. **신청 및 교육생 선정 방법**
 - 가. 접수기간 : 2024. 6. 10.(월) 09:00 ~ 2024. 7. 31.(수) 12:00
 - 나. 신청서 제출
 - 1) 제출서류 :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과정 신청서
 - 2) 교과목 면제 관련 증빙서류(교과목 면제자 신청 해당자에 한함)
 - ※ 학력사항 증빙서류(졸업증명서), 국가/민간 자격증, 경력 확인서(서식참조) 등
 - 3) 제출처 : 대구대학교 메이커스페이스센터(AZIT) 행정실 (문의처 : (053)850-4726)
 - 4) 제출(접수)방법 : e-mail 접수, 현장방문
 - 메일주소: jaeps784@daegu.ac.kr(유선으로 수신확인 필)
 - 다. 선정방법(선발기준) : 다음 순위에 의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 1) 선착순 접수(현장접수 우선, 이메일 수신인 경우 메일 도착 순으로 접수번호 부여)

2) 제출서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3) 과목 면제 대상자는 신청서 접수순(교과목 면제 관련 증빙서류 검토 통과 必)으로 선발한다.

- 과목별 면제 대상자 신청 인원 초과 시 자동으로 일반 신청과정(전과목 수강)으로 접수한다.

4) 교육비를 납입하지 않으면 포기로 간주하며, 차순위 신청자를 선발한다.

라. 선정결과(합격자) 안내 : 제출 서류 검토(결격사유 등) 확인 후 입금정보 개별 안내

마. 교육비 납입 기간: 개별안내

바. 등록 방법(교육비 수납방법) : 계좌등록 [대구은행: 505-10-232049-1 예금주: 대구대학교산학협력단(목재교육전문과정)]

8. 교육과정 및 자격취득 기준

가. 교육과정

과정	교과목	세부교과목	교육시간		
			합계	강의	실습
			176	92	84
목재교육개론	목재교육입문	정책과 제도	2	2	0
		목재와 문화	2	2	0
		산림과 목재	2	2	0
	목재교육 전문가 일반	목재교육 전문가론	2	2	0
		목재교육 경영론	3	3	0
	목재과학	목재특성	14	10	4
		목재가공	8	8	0
		목재이용	6	6	0
			계	39	35
목재교육실무	제도의 이해	제도 기초	5	3	2
		투시도법	5	2	3
		도면의 표시	6	2	4
		재단도면계획	2	1	1
	목재가공 실무	측정 및 표시공구	2	1	1
		수공구	9	3	6
		전동공구	9	3	6
		목공기계	4	2	2
		마감기법	6	2	4
	목재가공 실습	목재가공실습 I	12	2	10
		목재가공실습 II	12	2	10
		종합실습	12	2	10
	목재가공 안전	작업안전	2	2	0
		실습실 안전	2	2	0
			계	88	29
목재교육방법론	교육과정	목재교육정의	2	2	0
		목재교육과정설계	4	1	3
		교재개발	4	2	2
	교수학습	교육철학	2	2	0
		교수학습모형	2	2	0
		실기교육방법론	3	3	0
		직업 및 진로지도	3	3	0
		교수설계의 이해	2	2	0
	수업설계	수업매체활용	3	1	2
		수업지도안 작성	8	1	7

	평가	실습장구성	1	1	0
		사례분석	2	1	1
		평가관	1	1	0
		평가의 절차와 종류	2	1	1
		사례분석	2	1	1
계			41	24	17
안전	응급처치교육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등	8	4	4

나. 교육방법 : 강의 및 실습

다. 자격취득 기준 : 목재교육 전문과정 총 교육시간(176시간)의 8할 이상을 출석한 자로(단 일부 교과목을 면제받는 자는 면제받은 교과목을 제외한 교육시간의 8할 이상을 출석한 자로), 목재교육 자격시험을 통과한 자

구분	평가 방법	이수기준
출석률	출결 관리	총 교육시간의 8할 이상 출석 ※ 교과목 면제대상자는 면제받은 교과목을 제외한 교육시간의 8할 이상
자격시험	필기 시험	과목(목재교육개론, 실무, 방법론)당 100점을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9. 교육비 및 면제 기준

가. 교육비 : 2,050,000원

나. 교과목 면제에 따른 교육비 면제기준 : 수업료 - (면제시간X10,000원)

다. 환불 규정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별표3] 적용

*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3] <개정 2022. 8. 9.>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 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 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 학습비에 따른 총 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10. 결격사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6(목재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목재교육전문가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결격사유 해당여부는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 사항

- 신청서 및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교육 선발이 취소될 수 있음.
- 개인사정 등으로 미 출석하여 교육 이수 기준 미달에 대한 책임은 교육생 본인에게 있음.

12. 문의처 : 대구대학교 메이커스페이스센터(AZIT) 행정실 (053) 850-4726

제8기 목재교육 전문과정 신청서

접수번호

인적사항	성명 (한글)			
	생년월일	(※ 단체보험 신청 시 활용됩니다.)		
	주소			
	연락처 (자택)	(휴대폰)		
	전자메일			
교과목 면제 여부	면제 과목		보유 자격	
	<input type="checkbox"/> 목재과학, <input type="checkbox"/> 목재가공실무, <input type="checkbox"/> 교수학습, 수업설계		<input type="checkbox"/> 관련자격증 <input type="checkbox"/> 경력	

< 목재교육 전문과정의 면제 구분 >

면제대상자	면제 과목	면제 시간
1.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라 목재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사람	목재과학	28시간
2. 「고등교육법」 제50조에 따라 목재관련 전문학사학위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전공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목재과학	28시간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 임산가공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목재과학	28시간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목공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목재가공실무	30시간
5. 「자격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목공 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목재가공실무	30시간
6.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라 교육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사람	교수학습, 수업설계	26시간
7. 「고등교육법」 제50조에 따라 교육관련 전문학사학위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전공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교수학습, 수업설계	26시간
8. 직업훈련교사 3급 이상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교수학습, 수업설계	26시간

* 목재교육 전문과정의 면제구분 자세한 사항은 [별첨1] 참조

<결격 사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6(목재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목재교육전문가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결격사유 해당여부는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결격 사유에 해당없음을 확인 합니다. 신청인 (인)

본 기관은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과정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전자메일, 자격증빙서류 등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3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과정 수강생 선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 (인)

등록계좌: 대구은행: 505-10-232049-1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안내전화: 053-850-4726

대구대학교 총장 귀하

[별첨1]

1. 목재관련 학과는 임산공학과, 목재종이과학과, 산림과학부(환경재료과학전공) 등 목재관련 교과목이 개설된 학과를 말한다.
2. 목공 관련 국가자격이란 목공예기능사, 가구제작기능사, 가구제작산업기사, 건축목공기능사, 건축목공산업기사, 실내장식기능사, 건축목공 기능장, 문화재수리기술자(소목, 건축)등을 말한다.
3. 목재교육 전문과정의 면제구분 표에 따라 세부 교과목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학위 증명서, 교과목 이수확인증, 관련 분야 종사 경력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경력기간 산정방법]

[표1. 경력기간 산정방법]

1. 연속된 경력기간 산정방법

가. 주근무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하여는 100% 경력 인정(2가지 이상의 경력이 같은 기간에 있는 경우에는 1일 근무시간을 최대 8시간까지 합산할 수 있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나. 주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text{주근무시간 40시간 미만의 근무월수} \times \frac{\text{주근무시간}}{40} = \text{인정 월수}$$

2. 불연속 경력기간 산정방법

가. 일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인 날에 대하여는 100% 경력 인정(2가지 이상의 경력이 같은 날 있는 경우에는 최대 8시간까지 합산이 가능하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나. 일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인 날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text{일근무시간 8시간 미만의 근무일수} \times \frac{\text{일근무시간}}{8} = \text{인정 일수}$$

다. 인정 일수에 따른 인정 월수의 산정

$$\frac{\text{인정 일수}}{25} = \text{인정 월수}$$

※ 비고

1. 제1호의 “주근무시간”이라 함은 주 40시간 범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용역 발주자와 용역수행자 간에 정한 근무시간을 말한다.
2. 제2호의 “일근무시간”이라 함은 일 8시간 범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용역 발주자와 용역수행자 간에 정한 근무시간을 말한다.
3. 경력기간 산정방법은 제1호의 연속된 경력기간 산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1호의 산정방법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제2호의 불연속 경력기간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4.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산정결과는 12개월을 1년으로 본다.
5.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산정결과는 합산이 가능하다.
6. 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고, 경력은 누적 합산이 가능하다.